

부속서 2-가

관세 철폐

1. 이 부속서의 양허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,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은 제 2.4조에 따른 각 당사국의 관세 철폐에 적용된다.

가.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“A”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그 품목에 대하여 완전히 철폐되며, 이 협정의 발효일에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.

나.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“B”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그 품목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,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.

다.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“C”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그 품목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,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.
그리고

라.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“X”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그 품목에 대하여 기준세율이 유지된다.

2. 품목에 대한 각 관세 인하 단계에서의 과도적인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관세율 및 단계별 양허유형은 그 품목에 대하여 양허표에 표시된다.

3. 과도적인 양허 단계별 관세율은 최소한 백분율의 가장 근접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되도록 그 아래는 버리거나, 관세율이 통화단위로 표시되는 경우, 한국의 경우 최소한 가장 근접한 원 단위로 표시되도록, 그리고 조지아의 경우 최소한 가장 근접한 라리 단위로 표시되도록, 그 아래는 버린다.

4. 이 부속서 및 그에 포함된 양허표의 목적상, 이행 1년차란 제18.5조에 규정된 대로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를 말한다.

5. 이 부속서 및 그에 포함된 양허표의 목적상, 이행 2년차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별 관세인하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한국의 관세양허표

일반 주해

1. 이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관세율은 2023년 1월 1일에 발효 중인 한국의 최혜국 실행 관세율을 반영한다.
2. 이 부속서는 2023년 1월 1일에 발효 중인 한국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(이하 “HSK”라 한다)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. 이 양허표의 규정에 대한 해석은 HSK의 일반 주해,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.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에서,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.

조지아의 관세양허표

일반 주해

- 이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관세율은 2024년 1월 26일에 발효 중인 조지아의 최혜국
실행관세율을 반영한다.
- 이 부속서는 2024년 1월 26일에 발효 중인 조지아 재무장관령 제21호에 의하여 승
인된 조지아 외국경제활동국가상품품목분류표(이하 “FEANCN” 라 한다)에 기초하여 작
성되었다. 이 양허표의 규정에 대한 해석은 FEANCN의 일반 주해,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
하여 규율된다.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FEANCN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에서, 이
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FEANCN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.